

January
2025

NEWSLETTER

국제통상팀

International Trade Team

CONTACT



변호사 박정현

T: 02.6386.6649

E: junghyun.park@leeko.com

외국변호사 정기창

T: 02.772.5904

E: kichang.chung@leeko.com

변호사 주현수

T: 02.6386.6363

E: hyunsoo.joo@leeko.com

미국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"미국우선 통상정책(America First Trade Policy)" 행정명령(Presidential Memorandum [원문 링크](#))에 서명하였습니다.

여기에는 예상되었던 보편관세, 대중국 추가관세 등 관세부와 조치가 포함되지는 않았고, 대신 추후 관세부과의 근거가 될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(제2(a)조, 제3(b)조, 제4(a)조 등).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2월 1일경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% 관세, 중국에 대해 10%의 추가 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한편,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(TikTok) 금지 집행 정지,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등 합의(Pillars 1 & 2) 철회 및 미국 에너지의 해방(전기차 의무화 철폐 포함)에 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였습니다. 또한 "유해 행정명령 및 조치의 1차 취소"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(IJA) 시행 관련 및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의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관련 각 행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(관련 뉴스레터는 추후 별송 예정).

미국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은 제1조 배경, 제2조 불공정·불균형 무역에 대한 조치, 제3조 중국과의 경제·무역 관계, 제4조 추가적인 경제안보 현안, 제5조 보고 등 5개의 조항(section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 이 중 노란색 강조표시된 사항들이 특히 우리 정부 또는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상무부 장관, 재무부 장관과 USTR은 4월 1일까지 이 행정명령에 따른 통합 보고서를, 예산관리처장은 제4(f)조 관련 규범안을 4월 30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1. 불공정·불균형 무역 관련 조치

조항	소관/협조 기관	명령 내용
§ 2(a)	상무부 장관 (협조: 재무부 장관, USTR)	- 무역적자의 원인 및 경제·국가안보적 영향과 위험 조사 - 무역적자 해소 조치(예: 글로벌 추가 관세 등) 권고
§ 2(b)	재무부 장관 (협조: 상무부 장관, 국토안보부 장관)	대외세입청(External Revenue Service) 설립방안 검토
§ 2(c)	USTR (협조: 재무부 장관, 상무부 장관,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선임고문)	불공정 무역 관행의 검토 및 대응 조치(통상법 337조, 338조, 201조, 301조,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 등에 따른 조치 포함) 권고
§ 2(d)	USTR	2026년 7월 USMCA 검토(review) 준비를 위한 USMCA 관련 공개 협의 절차 개시

§ 2(e)	재무부장관	■ 주요 무역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 검토·평가
§ 2(f)	USTR	■ 기체결 통상협정 검토 및 필요시 개정안 권고
§ 2(g)	USTR	■ 미국 노동자, 농부, 목장주, 서비스 공급자 및 기타 기업에 대한 수출 시장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협상 방안 마련
§ 2(h)	상무부장관	■ 반덤핑/상계 관세 적용 관련 정책 및 규정 검토 (초국경보조금, 비용조정, 제후, 제로잉 포함)
§ 2(i)	재무부장관, 상무부장관, 국토안보부장관,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선임고문 (협조: USTR)	■ 관세 수입 손실(800달러 이하 면세 관련)과 위조품 및 밀수 약물 수입으로 인한 위험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
§ 2(j)	재무부장관 (협조: 상무부장관, USTR)	■ 미국 시민·법인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·역외 세금 조사
§ 2(k)	USTR (협조: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선임고문)	■ WTO 정부조달협정 포함, 모든 통상협정의 연방 조달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미국 노동자·제조업체에 유리한 이행 보장 방안 마련

2. 중국과의 경제·무역 관계

조항	소관/협조 기관	명령 내용
§ 3(a)	USTR	■ 중국의 미·중 1단계 무역협정 준수 여부 검토하여 관세 부과 기타 필요 조치 권고
§ 3(b)	USTR	■ 301조 대중국 관세 영향 평가 보고서 평가 및 필요시 잠재적인 추가 관세 조정 고려(특히 산업 공급망 및 제3국 경유 우회 관련)
§ 3(c)	USTR	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의 기타 행위, 정책 및 관행 조사 및 301조 조치 등 대응 조치 권고
§ 3(d)	상무부장관, USTR	■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(PNTR) 관련 법안 평가 및 해당 법안 수정 권고
§ 3(e)	상무부장관	■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 지재권의 상태 평가 ■ 중국과의 호혜적·균형적 지재권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 제시

3. 추가 경제안보 현안

조항	소관/협조 기관	명령 내용
§ 4(a)	상무부장관 (협조: 국방부장관 기타 관련 기관장)	■ 미국 산업 및 제조 기반에 대한 전면적 경제·안보 검토 실시하여 232조 조사 개시 필요성 평가
§ 4(b)	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(협조: 상무부장관, USTR,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선임고문)	■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32조에 따른 철강·알루미늄에 대한 제외, 면제 및 기타 수입조정 조치의 실효성을 검토·평가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권고안 제시

§ 4(c)	국무부 장관, 상무부 장관 (협조: 다른 수출통제기관장)	- 미국 수출통제제도를 검토하여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, 획득 및 향상 방안과 기존 수출통제의 허점 식별 및 제거 방안 마련 - 수출통제 집행 정책 및 업무 관련 권고안 및 통상·국가안보 조치 등 외국의 준수를 장려하는 집행 메커니즘 권고안 마련
§ 4(d)	상무부 장관	- 최근 제정된 커넥티드카 관련 규정 검토 및 적절한 조치 권고 - 다른 커넥티드 제품에 대한 통제 확대 고려
§ 4(e)	재무부 장관 (협조: 상무부 장관 기타 관련 기관장)	우려국가에서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 관련 기존 행정명령의 수정·폐지 또는 대체 필요성 검토 및 관련 최종 규칙에 국가안보 위협 해결을 위한 충분한 통제 포함 여부를 평가하여 아웃바운드 투자 보안 프로그램의 잠재적 수정 권고안 마련
§ 4(f)	예산관리처장	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이 연방 조달 프로그램에 미치는 왜곡 효과 평가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 등의 제안
§ 4(g)	상무부 장관, 국토안보부 장관	캐나다, 멕시코, 중국, 기타 국가로부터의 불법 이주와 펜타닐 유입 평가 및 이러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통상 및 국가안보 조치 권고

법무법인(유) 광장 국제통상팀은 국제통상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통상 분야 이슈에 관하여 국내·외 고객께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위 행정명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국제통상 이슈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국제통상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법무법인(유)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[\[수신거부\]](#)를 클릭해 주십시오.

뉴스레터 더 보기